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앞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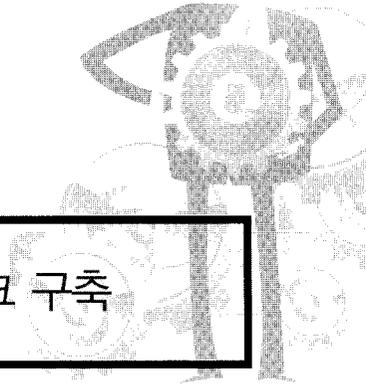
정부는 7월 8일(금)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위·수탁(지입)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고 있어,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의 종사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계할 방침으로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방식(보험료 사업주 및 종사자 각 1/2 부담, 당연 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부담,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 각 업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 협의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11. 6.30 국회 통과)이 발효되면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도 '12. 1월부터는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구축

안전보건 관련 노·사·민·정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지난 7.7(목) 고용노동부는 COEX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안심일터 추진본부는 정부·노사단체·유관기관·직능단체 등 379개 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모여 “참여과 소통을 통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전보건 네트워크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존 산업안전보건 사업 추진체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안전보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 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3, 4 세션은 소셜네트워크 분야의 민간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이 「소셜미디어가 여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해서, 관동의대 정지훈 교수가 「이상적인 On-Off Line 네트워크 구축·활용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 주체별 재해예방 활동 참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제언하였다.

고용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 및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운영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월)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가이드라인 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가칭)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범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병행하여 원·하청 사업주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확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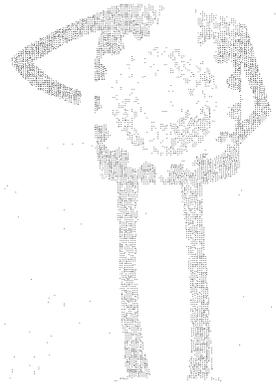
-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전체회의 6회, 간사회의 7회, 워크숍 1회 등 총 1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공익위원 회의를 9회 집중 개최하여 공익위원안 마련(5.27)
-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사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공익위원안에 노사의견을 병기하여 정부에 이송(7.8)
- 공익위원들이 사내하도급의 현실, 노사의 입장,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확정(7.18)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원·하청 사업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영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하여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①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함
 -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



- 사업주에게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 ② (근로조건 개선)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금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수급사업주 상호 노력
 -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④ (복지후생) 원사업주의 복지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교육장소 등 지원 🍀

원고를 보내주세요

월간 「산업보건」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산업보건의 발전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월간 「산업보건」에 많은 투고와 성원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 투고 부문 :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논문 및 조사연구 보고
산업보건 사례
산업보건관련 자료
- 원고 송부 : e-mail : pr@kiha21.or.kr
우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0-32
대한산업보건협회 월간 「산업보건」담당자 앞
- 문의 : e-mail : pr@kiha21.or.kr / TEL : (02) 2046-0531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56호

개정 2011. 7. 29 고시 제2011-38호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년 7월2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